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79호서식] <개정 2010.12.31>

(앞쪽)

제 호

임시운전증명서

이 증명서는 「도로교통법」 제91조에 따라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경 찰 서 장 (직인)

---------- 접 는 선 ----------

(운전자용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	
주소				
면허종별 및 번호				
유효기간				일간
발급사유	[ ] 재교부	[ ] 적성검사	[ ] 기재사항변경	[ ] 행정처분집행
면허조건				

유의사항

1.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(변조)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면허가 없는(정지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)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사용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위반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.

---------- 접 는 선 ----------

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

(경찰서용) (뒤쪽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	
주소				
면허종별 및 번호				
유효기간				일간
발급사유	[ ] 재교부	[ ] 적성검사	[ ] 기재사항변경	[ ] 행정처분집행
면허조건				
발급자	계급		성명	

210㎜×297㎜(인쇄용지(특급) 34g/㎡)